

검사 실시결과통보서

문서번호	E안산지사G5-2024-4314	고객안내번호	4025-2405-0347-2	
접수번호	4025-20240429-00035	관할검사기관	안산지사	
건물명	안산문화재단			
건물주소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(고잔동)			
검사종류	정기검사	검사대수	9대	
검사일	2024.06.19	검사자 / 입회자	김영철 / 유지관리업체	
판정결과	합격	보완	조건부합격	불합격
	8	0	0	1
	※ 관련 근거 :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8조, 제32조 - 합격 : 설치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는 경우 - 보완 : 설치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(설치검사 진행중) - 조건부합격 : 설치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으나 그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- 불합격 : 설치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			
안내사항	① 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(승강기 안전관리자)」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선임하지 않았다면 즉시 안전관리자 선임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법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법정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※ 안전관리자 선임신청 : 승강기민원24(https://minwon.koelsa.or.kr) ※ 교육신청 : 승강기교육센터(https://edu.koelsa.or.kr) ②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(검사주기 6개월)가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가 완료된 후 다음번 검사주기도래 안내문이 발송됨에 따라 해당 승강기는 검사주기도래일에 임박하여 안내될 수 있습니다.			
위와 같이 고객님의 신청하신 승강기검사에 대한 검사실시결과를 안내드리며, 승강기별 세부사항은 검사성적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2024년 06월 20일 첨부 1. 검사실시결과내역서 2. 검사성적서 3. 불합격내역서 4. 시정권고내역서 5.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기준				
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				
안산지사 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,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301호 (사동) TEL : 1566-1277				

검사실시결과내역서

고객안내번호	4025-2405-0347-2	접수번호	4025-20240429-00035	
건물명	안산문화재단			
건물주소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(고잔동)			
검사종류	정기검사	관할검사기관	안산지사	
검사실시일	2024.06.19			
상세내역				
승강기고유번호	호기(설치장소)	형식/종류	판정결과	검사유효기간(보완기간)
2053-789	1(1-1(공연))	권상식/VVVF/장애인용	불합격	
2053-790	2(1-2(공연))	권상식/VVVF/장애인용	합격	2024.05.31 ~ 2025.05.30
2053-791	3(1-3(공연))	권상식/VVVF/승객용	합격	2024.05.31 ~ 2025.05.30
2053-792	4(1-4(공연))	권상식/VVVF/승객용	합격	2024.05.31 ~ 2025.05.30
2053-793	5(1-5(공연))	권상식/VVVF/승객용	합격	2024.05.31 ~ 2025.05.30
2053-794	6(1-6(공연))	권상식/VVVF/승객용	합격	2024.05.31 ~ 2025.05.30
2053-795	7(1-7(공연))	권상식/VVVF/승객용	합격	2024.05.31 ~ 2025.05.30
2053-796	8(1-8(공연))	권상식/VVVF/승객용	합격	2024.05.31 ~ 2025.05.30
3902-249	12(1-12(공연))	가이드로프식/경사형LIFT/경사형휠체어리프트	합격	2024.05.31 ~ 2025.05.30

- 이하여백 -

불합격내역서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제28조(승강기의 설치검사), 제32조(승강기의 안전검사)에 따라 실시한 승강기 검사결과,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습니다.

이에, 고객님께서 해당 승강기의 부적합사항에 대해 보완조치 완료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기간(4개월)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할지자체로 통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고객안내번호	4025-2405-0347-2	접 수 번 호	4025-20240429-00035
건 물 명	안산문화재단		
건 물 주 소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(고잔동)		
검 사 종 류	정기검사	관 할 검 사 기 관	안산지사
검 사 실 시 일	2024.06.19	재검사신청만료일	2024.10.19
상세내역			
호기(설치장소)	검사항목	부적합내용	
1(1-1(공연))	1.1	검사불가 (기본제원)	
1(1-1(공연))	1.2	검사불가 (기계류 공간)	
1(1-1(공연))	1.3	검사불가 (승강로)	
1(1-1(공연))	1.4	검사불가 (카, 운전 및 접근허용)	
1(1-1(공연))	1.5	검사불가 (매다는 장치, 보상수단, 제동 및 권상)	
1(1-1(공연))	1.6	검사불가 (안전회로)	
1(1-1(공연))	1.7	검사불가 (카 및 균형추의 추락방지안전장치와 과속에 대한 보호)	
1(1-1(공연))	1.8	검사불가 (주행성능 측정)	
1(1-1(공연))	1.9	검사불가 (전기적 보호)	
1(1-1(공연))	1.10	검사불가 (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추가 요건)	
1(1-1(공연))	1.13	검사불가 (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의 상태)	
1(1-1(공연))	1.14	검사불가 (그 밖의 표시 등)	
1(1-1(공연))	1.15	검사불가 (자체점검의 확인)	

※ 부적합내용에 대한 검사항목별 검사기준내용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시정권고내역서

공단에서는 승강기 검사와 별도로 승강기 품질유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안전취약항목 및 개선방법을 시정권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

이에, 고객님께서서는 시정권고 내용을 확인하여 승강기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고객안내번호		4025-2405-0347-2	접수번호		4025-20240429-00035
건물명		안산문화재단			
건물주소	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(고잔동)			
검사종류		정기검사	관할검사기관	안산지사	
검사실시일		2024.06.19			
상세내역					
검사항목	시정권고내용				호기(설치장소)
(정밀) 10.6/10.7	브레이크 시스템의 노후 등에 따른 제동력 상실로 문열림출발이나 상승과속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다음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10.6, 10.7에 적합한 상승과속방지수단 및 문열림출발방지장치의 설치를 권고합니다.				1(1-1(공연)) 2(1-2(공연)) 3(1-3(공연)) 4(1-4(공연)) 5(1-5(공연)) 6(1-6(공연)) 7(1-7(공연)) 8(1-8(공연))
(정밀) 13.2.2	브레이크가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동력 상실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다음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 13.2.2에 적합한 이중(기계적, 전기적)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변경을 권고합니다.				1(1-1(공연)) 2(1-2(공연)) 3(1-3(공연)) 4(1-4(공연)) 5(1-5(공연)) 6(1-6(공연)) 7(1-7(공연)) 8(1-8(공연))
(정밀) 13.2.3.6	자동구출운전수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엘리베이터 내 장시간 갇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 13.2.3.6에 적합한 자동구출운전수단의 설치를 권고합니다.				1(1-1(공연)) 2(1-2(공연)) 3(1-3(공연)) 4(1-4(공연)) 5(1-5(공연)) 6(1-6(공연)) 7(1-7(공연)) 8(1-8(공연))
(정밀) 7.5.3.2	승강장문 비상 가이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승강장문 이탈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 7.5.3.2에 적합한 승강장문 비상 가이드 장치의 설치를 권고합니다.				1(1-1(공연)) 2(1-2(공연)) 3(1-3(공연)) 4(1-4(공연)) 5(1-5(공연)) 6(1-6(공연)) 7(1-7(공연)) 8(1-8(공연))
(정밀) 7.5.3.8	승강장문 조립체(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)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승강장문 이탈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 7.5.3.8에 적합한 승강장문 조립체(이탈방지)장치 설치를 권고합니다.				1(1-1(공연)) 2(1-2(공연)) 3(1-3(공연)) 4(1-4(공연)) 5(1-5(공연)) 6(1-6(공연)) 7(1-7(공연)) 8(1-8(공연))
					1(1-1(공연))

검사항목	시정권고내용	호기(설치장소)
(정밀) 7.6.2.2.1	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승강장 문짝과 문설주 사이에 손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다음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 7.6.2.2.1에 적합한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의 설치를 권고합니다.	2(1-2(공 연)) 3(1-3(공 연)) 4(1-4(공 연)) 5(1-5(공 연)) 6(1-6(공 연)) 7(1-7(공 연)) 8(1-8(공 연))
	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카 문짝과 문설주 사이에 손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다음 정밀안전검사 전까지 안전기준 7.6.2.2.1에 적합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의 설치를 권고합니다.	1(1-1(공 연)) 2(1-2(공 연)) 3(1-3(공 연)) 4(1-4(공 연)) 5(1-5(공 연)) 6(1-6(공 연)) 7(1-7(공 연)) 8(1-8(공 연))

- 이 하 여 백 -

